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목 차>

## 1.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처분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작 성 자	이름	노규진
	담당부서 (과)	방역정책국		직급	농업주사
	국장	박정훈		연락처	044-201-2520
	과장	이동식		이메일	nh5685@korea.kr

2021. 10. 26. 작성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처분기준		
	2.규제조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6조		
	3.위임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12.01 ~ 2021.12.2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추진배경)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요한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로 인해 가축 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등에게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① 격리·역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 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③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⑤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자, ⑥주사 명령 등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⑦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자 ○ 현행 법령상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명령의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일선 현장에서 명령 및 처분에 혼선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법령에 따른 폐쇄 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7.규제내용	○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사육제한 처분 세부기준 설정 ○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사육제한 처분 절차 마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122,304호(2021.10. 기준) ○ 관계기관 :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122,304호(2021.10.월 기준)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방역 부서 공무원	
	<b>9.규제목표</b>	<p>○ (도입목표) 현행 법령에 따른 폐쇄 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p> <p>○ (기대효과)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 등이 지켜야할 중요한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에 기여</p>		
	<b>10.영향평가 여부</b>	<b>기술영향평가</b>	<b>경쟁영향평가</b>	<b>중기영향평가</b>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b>규제의 적정성</b>	<b>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b>	<p>○ 아프리카돼지열병·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 예측이 어렵고, 발생할 경우 대규모 살처분, 이동제한, 소독 등으로 막대한 방역비용이 소요되어 축산업계 전반에 큰 손실을 야기함</p> <p>*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발생에 따른 생산성 악화로 낙농, 육우, 양돈 산업의 생산액 10% 감소시 생산유발액 감소 2조 3,849억원, 부가가치 감소 5,608억원, 고용유발 감소 29,487명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농촌경제연구원, 2017)</p> <p>○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요한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등의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직·간접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음</p>		
<b>기타</b>	<b>12. 일몰 설정 여부</b>	○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일몰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b>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 여부</b>	○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②</p> <p>(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②</p> <p>(현행과 같음)</p> <p>③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p> <p>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가축을 해당 사육시설·장소에서 반출·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위험도에 따라 가축방역상 긴급한 반출·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처분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거나 가축방역상 긴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처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별표 1의2]</p> <p style="text-align: center;"><u>가축 사육시설의 폐쇄·사육제한</u> <u>기준(제6조제3항 관련)</u></p> <p>1. 일반기준</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p>

현행	개정안																																	
	<p>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p> <p>다. 폐쇄 또는 사육제한 처분의 시작일은 가축 사육시설에서 가축이 모두 처분된 시점부터 적용한다.</p> <p>1) “폐쇄”란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닫거나 막아 그 가축사육시설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p> <p>2) “사육제한”이란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비워 그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의 사육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라. 처분 기준 중 2회라 함은 1회의 처분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해당 위반사항을 위반하거나 1회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3회 이상의 경우도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p> <p>2.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805 750 1431 2056"> <thead> <tr> <th rowspan="2">위반사항</th> <th rowspan="2">근거 법조문</th> <th colspan="3">처분기준</th> </tr> <tr> <th>1회 이상</th> <th>2회 이상</th> <th>3회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 품의 격리·역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의 경우</td> <td>법 제19조 제4항 제1호</td> <td>사육제한 3개월</td> <td>사육제한 6개월</td> <td>폐쇄</td> </tr> <tr> <td>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의 경우</td> <td>법 제19조 제4항 제2호</td> <td>사육제한 3개월</td> <td>사육제한 6개월</td> <td>폐쇄</td> </tr> <tr> <td>3)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의 경우</td> <td>법 제19조 제4항 제3호</td> <td>사육제한 3개월</td> <td>사육제한 6개월</td> <td>폐쇄</td> </tr> <tr> <td>4)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의 경우</td> <td>법 제19조 제4항 제4호</td> <td>사육제한 3개월</td> <td>사육제한 6개월</td> <td>폐쇄</td> </tr> <tr> <td>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의 경우</td> <td>법 제19조 제4항 제5호</td> <td>사육제한 3개월</td> <td>사육제한 6개월</td> <td>폐쇄</td> </tr> </tbody> </table>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이상	2회 이상	3회 이상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 품의 격리·역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1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2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3)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3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4)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4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5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이상	2회 이상	3회 이상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 품의 격리·역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1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2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3)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3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4)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4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5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현 행	개 정 안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5의2 호	사육제한 3개월 (3회 위반)	사육제한 6개월 (4회 위반)	폐쇄 (5회 이상 위반)
	7)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6호	경고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요한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등에게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위반자
-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확산되게 한 자
- ③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확산되게 한 자
- ④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확산되게 한 자
- ⑤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 ⑥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 ⑦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자

- **(문제점)** 현행법상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명령의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일선 현장에서 명령·처분이 어려움
- 특히, 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 대한 조사 결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하거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적발되는 등 개별 농가의 방역기준 위반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사례 1 >

- ◎ A군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한 농가에 대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법률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치는 등 행정처분에 어려움을 겪음

< 사례 2 >

- ◎ B도는 도내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및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 명령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여 법률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치는 등 행정처분에 어려움을 겪음

- **(내용)**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요한 방역기준을 준수하지않아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개입 필요성)**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 예측이 어렵고, 발생할 경우 대규모 살처분,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조치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축산업계 전반에 큰 손실을 야기함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발생에 따른 생산성 악화로 낙농, 육우, 양돈 산업의 생산액 10% 감소 시 생산유발액 감소 2조 3,849억원, 부가가치 감소 5,608억원, 고용유발 감소 29,487명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농촌경제연구원, 2017)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역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설치 등에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도화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와 세부 기준 신설
-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대한한돈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개선대책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등 설명</li> <li>○ 관련 법령 개정안 설명</li> </ul>	의견 수렴

## 3. 규제목표

-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요한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요한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등에게 가축 사육 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명령의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일선 현장에서 행정처분이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 예측이 어렵고, 발생할 경우 대규모 살처분,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조치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축산업계 전반에 큰 손실을 야기함  
-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시 식품·외식, 지역 관광산업 등 연관 산업에도 피해를 주는 등 상당히 많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함

\* ASF 발생에 따른 경기 북부지역 안보관광 중단,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철새도래지 관광 중단 등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농가소득을 높이는 등 전체 축산업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단으로 판단됨
- 특히, 가축전염병은 발생 예측이 어렵고, 발생할 경우 대규모 살처분,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조치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해당 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므로 비례적으로도 타당한 수단으로 판단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 기존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국가표준(KS 등) 및 국제기준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 - 경쟁영향평가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를 그 위반행위에 대한 회차별 행정처분의 정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축산농가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가격과 생산 또는 품질과 상품, 서비스 다양성을 제한하지 않아 경쟁 영향 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를 그 위반행위에 대한 회차별 행정처분의 정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만 특정된 규제는 아니므로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일몰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중요한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 (미국) 상업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생산자는 ①출입자, ②차량(운전자)·장비, ③축사, ④사료·물, ⑤쥐·해충, ⑥배설물·폐사축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가축의 입식제한 사육허가 중지 등의 규제를 적용함
  - \* 생물학적 안전 조치 : 가축전염병이 인간, 동물, 장비, 차량 등을 통해 농장이나, 가금류 사육시설 등에 전염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함
- (유럽)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돼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역기준”을 운영하면서 돼지 사육 시 차량·사람·물품에 및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방역시설을 설치 기준 및 사육단계별 방역조치를 규정하고 위반 시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입식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적용함

#### ○ 타법사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규칙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한 폐쇄 및 운영 중단 행정명령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

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1. 공통기준

-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같은 날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 마.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바. 마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마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관리자·운영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아. 운영중단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감경 또는 가중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 자.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

##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법 제49조 제3항	운영중단	운영중단	운영중단	폐쇄명령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10일	20일	3개월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 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 예측이 어렵고, 발생할 경우 대규모 살처분,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조치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축산업계 전반에 큰 손실을 야기함
- 가축전염병의 특성, 주변국의 발생 상황, 국내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가축 사육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방역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하는 것은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방법임
- 대부분의 축산농가도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 상황 및 관련 산업의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중요한 방역조치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가축 소유자등이 적정한 방역관리를 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특히, 중요한 방역기준 중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의 보조사업\*을 통해 농가의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농가소득 제고를 고려할 때 규제에 대한 순응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축사시설현대화(‘20년 기준 1,902억원)로 지원 중(보조율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10)

- 이러한 사유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가축 사육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폐쇄 또는 사육제한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피규제자인 축산농가의 규제 수용력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요한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등에게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업무가 추가되거나 행정처분 집행에 문제가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관리가 미흡한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지 않아 재정적 집행가능성에는 문제가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11.1.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을 신설
  - 중요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가축 사육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및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 근거 마련
- '19.11.10. A군은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명령을 4회 위반한 가축 사육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 검토

- '20.11.30. B도는 구제역 백신 주사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가축 사육시설에 대해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 가능 여부 검토
- '21.5.27. 고병원성 AI 개선대책 마련
- '21.6.10. 고병원성 AI 개선대책 관련 가금단체 실무협의회 개최
- '21.6.14. 고병원성 AI 개선대책 관련 가금단체장 협의회 개최
- '21.6.18. 고병원성 AI 개선대책 관련 전문가 협의회 개최
- '21.9.3.~9.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협의

## 2. 향후 평가계획

-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추진하고 제도 도입 후 방역관리가 미흡한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계획
- 향후 관련 규정 위반 농가 현황 파악 및 행정처분 운영 실태를 평가할 계획

## 3. 종합결론

- 가축사육시설의 방역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가축전염병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국민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가축전염병에서 안전한 가축사육시설에서 건강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 신설되는 규제는 가축 사육업을 영위하는 가축 사육시설의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할 중요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기준으로서, 가축 사육시설의 방역관리가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의 소유자등이 지켜야 할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가축 사육시설의 방역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국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뿐만 아니라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서 가축의 사육 및 도축, 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가축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사육시설에 대해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대한 규제의 정도도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음
- 일반 국민들의 축산물의 품질향상, 동물복지, 축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반해 축산농가의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상황임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관리가 미흡한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축 사육시설의 방역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 예측이 어렵고, 발생할 경우 대규모 살처분, 이동제한, 소독 등으로 막대한 방역 비용이 소요되어 축산업계뿐만 아닌 사회전반에 큰 손실을 야기함
- 특히, 가축전염병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방역에 실패하여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재발생하는 경우 장기간 근절되지 못하고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
-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관리가 미흡한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축 사육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 이러한 제도 개선을 가축전염병의 효과적 예방과 철저한 차단방역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 공급하고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농가소득 제고 등 전체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처분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 <규제대안1 :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처분기준>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편익

(정성)세분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활동제목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사육제한 처분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편익항목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리카돼지열병·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 예측이 어렵고, 발생할 경우 대규모 살처분, 이동제한, 소독 등으로 막대한 방역비용이 소요되어 축산업계 전반에 큰 손실을 야기함</li> <li>*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발생에 따른 생산성 악화로 낙농, 육우, 양돈 산업의 생산액 10% 감소시 생산유발액 감소 2조 3,849억원, 부가가치 감소 5,608억원, 고용유발 감소 29,487명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농촌경제연구원, 2017)</li> <li>○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요한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등의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직·간접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음</li> </ul>

#### ②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편익

(정성)세분류	축산물 유통업자
활동제목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편익항목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li> <li>- (직접피해) 정부의 재정지출과 해당 가축의 수급 측면 변화에서 발생한 손실액</li> <li>- (간접피해) 연관 산업의 판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11월, 구제역) 살처분 보상, 방역비, 수매, 생계안정자금 등 정부 재정지출액은 3조 391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몰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율은 낙농 8.46%, 한육우 3.92%, 양돈 33.57%</li> <li>- (산업연관 분석 결과)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1,467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9,876억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425명</li> </ul> </li> <li>○ (201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따른 피해액은 약 2,88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금의 생산유발효과는 2.33으로 가금 생산액이 1원 감소하면 연관 산업 생산액은 2.33원 감소함</li> <li>-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55, 취업 유발계수는 10억 원당 21.9명, 고용 유발계수는 5.4명으로 부가가치 감소액은 1,584억 원, 고용 인력은 7,863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li> <li>- 가금산업 피해로 인해 연관산업의 생산액이 3,83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금산업과 연관산업을 합쳐서 6,711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li> </ul> </li> </ul> <p>[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 방역체계 개선방안(정책연구보고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li> <li>○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li> </ul>
--	--

③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 국민
활동제목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편익항목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피해) 정부의 재정지출과 해당 가축의 수급 측면 변화에서 발생한 손실액</li> <li>- (간접피해) 연관 산업의 판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li> </ul> </li> <li>○ (2010년 11월, 구제역) 살처분 보상, 방역비, 수매, 생계안정자금 등 정부 재정지출액은 3조 391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몰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율은 낙농 8.46%, 한육우 3.92%, 양돈 33.57%</li> <li>- (산업연관 분석 결과)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1,467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9,876억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425명</li> </ul> </li> </ul>